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358호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·규율되고 있으나,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관리·규율되고 있어,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·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,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.

또한, 최근에는 정자교 인도부 붕괴사고 등 시설물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상향하고,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시행령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여,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또한, 기초점검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하여, 보다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가.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규정 등(안 별표11 수정)

- 1)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신설하고, 기존에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(안 별표5 수정)

- 1) 기존에 초급기술자였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중급 기술자로 상향하여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함.

다. 정밀안전점검의 의뢰 제한 규정(안 제8조제4항 수정)

- 1) 현행 법령상 안전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을 설계·시공·감리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

점검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함.

- 2) 금번에 신설된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계·시공·감리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에는 정밀 안전점검의 의뢰를 제한하고자 함.

라. 기타 경미한 용어 수정(안 제14조제1항제4호 등 수정)

- 1) 법 개정에 따라 “유지관리업자” 용어를 “안전점검전문기관”으로 수정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시설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
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
- 전화(☎) 044-201-4596 / 팩스 044-201-555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(전화 044-201-459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